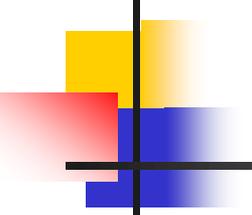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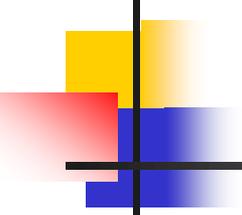
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변화와 개성공단 재개에 주는 함의

유현정 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Contents

1. 김정은 시기 특수 경제 지대 개요
2. 김정은 시기 경제 특구의 변화의 특징
3. 3개의 경제 특구 법제 특징 비교(거버넌스 구조)
 - 3-1. 거버넌스 특징
 - 3-2. 지대 관리의 원칙과 기업의 자율성 보장
 - 3-3. 장려 부문 산업과 세금 우대 조치
 - 3-4. 노동시장의 유연성
4. 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 특구 정책의 한계에 대한 대안모색
 - 4-1. 양자간 경제 협력
 - 4-2.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
 - 4-3. 법과 현실의 괴리 극복
5.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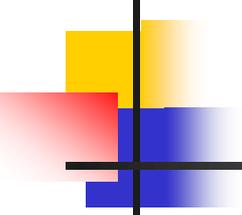


1. 김정은 시기 특수 경제 지대 개요 -1

- 1) 김정은 시기에 북한이 추진한 경제특구의 지정배경과 목적을 고찰하여 거시적 측면에서의 경제특구정책 변화를 규명 (제2장)
- 2) 미시적 측면에서 세부적인 법률과 제도를 비교 분석 (제3장)
- 3) 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변화가 지니는 한계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제4장)
- 4)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변화가 개성공단의 재개에 주는 시사점 (제 5장)

1. 김정은 시기 특수 경제 지대 개요 -2

| 구분 | 개성 | 라선 | 경제개발구 |
|---------------|---|---|--|
| 위 치 | 황해남도 | 함경북도 | 지역별 총 19개 |
| 면 적 | 66km ² | 약 470km ² | |
| 지정일 | 2002.11 | 1991.12 특수경제지대(2010) | |
| 유 형 | 공업지구 | 경제무역지대 | 공업·농업·관광·수출가공· 첨단기술개발구 |
| 관련 법 | 개성공업지구법 (2002) | 라선 경제무역지대법 (2011) | 경제개발구법 (2013) |
| 법의 목적 |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제1조) |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투자, 금융, 관광, 봉사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제1조) | 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라 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 (제1조) |
| 투자당사자 |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제 3조) |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제4조) |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해외동포(제5조) |
| 북한 측 개발참여 | 부정 (규정 없음) | 긍정 (총 계획요강 제33항) | 긍정 (법 제20조) |
| 북한기업의 입주여부 | 부정(규정 없음) | 긍정 (기업창설운영규정 제2조) | 긍정 (근거규정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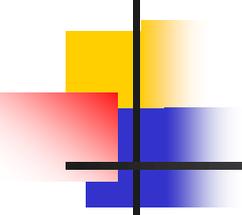


2. 김정은 시기 경제특구 변화와 특징 -1

1) 경제특구의 실리적 측면

- 개성공업지구 : 민족경제발전
- 라선 경제무역지대법 : 지대를 국제적인 경제특구로 발전
- 경제개발구 : 경제협력을 통해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 수준을 제고

✓정치적 목적포함 → 인민생활 수준 제고



2. 김정은 시기 경제특구 변화와 특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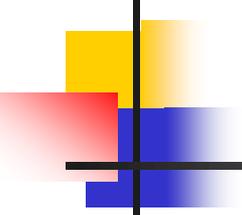
2) 라선 지대의 우수성 강조

-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 광역 두만강개발계획(GTI)-2009년 탈퇴
- 개성(남북경협), 라선 경제특구개발(북중)
- 양자간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한계점 노정

✓ 다자간 경제협력 → 양자간 경제협력 전환

3. 3개의 경제특구법 특징비교 (거버넌스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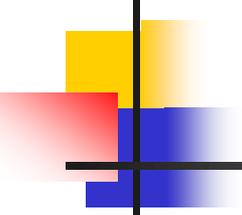
3-1. 거버런스 특징

1) 3단계 → 4단계 구조변화

- 1993년 라선법 : 중앙 - 지방 - 입주기업
- 2002년 개성공업지구법 : 중앙 - 관리위원회 - 입주기업
- 2011년 라선법 / 2013년 경제개발구법
: 중앙 - 지방 - 관리기관 - 입주기업

2) 지방행정기관의 권한 강화

- 대내 : 6.28방침, 대외:경제개발구 정책 → 자율성보장
- 지방정부는 관리기관의 구성에 직접참여, 관리기관의 독자성을 보장하면서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강화



3-2. 지대관리의 원칙과 기업의 자율성 보장

1) 라선법:지대관리의 원칙과 기업의 자율성 보장

2) 금강산 :법치경제와 시장경제

3) 경제개발구법:시장원리의 준수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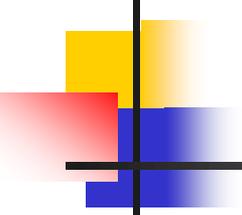
✓ 특구 경제의 핵심은 시장원리와 기업의 권리가 누락된 점은
북한경제특구의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욕 저하

3-3. 장려부문산업과 세금우대조치 -1

| | 개성 | 라선 | 경제개발구 |
|-------|---|--|---|
| 장려산업 | ■ 개성공업지구법 제4조 - 하부구조건설부문 - 경공업부문 - 첨단과학기술부문 |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6조 - 하부구조건설부문 - 첨단과학기술부문 -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 | ■ 경제개발구법 제6조 - 하부구조건설부문 - 첨단과학기술부문 -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 |
| 기업소득세 | ■ 개성공업지구법 제43조 - 일반 14% - 장려부문 10% |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67조 - 일반 14% - 장려부문 10% | ■ 경제개발구법 제45조 - 일반 14% - 장려부문 10% |

3-3. 장려부문산업과 세금우대조치 -2

| | 개성 | 라선 | 경제개발구 |
|------------------|--|---|--|
| 조 세 감 면 | <p>■ 개성공업지구법 세금규정 제29조</p> <p>1. 장려부문과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덜어준다.</p> <p>2.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2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1년간 50%를 덜어준다.</p> <p>3. 리윤을 재투자하여 3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의 70%를 다음 연도에 바쳐야 할 세금에서 덜어준다.</p> | <p>■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68조</p> <p>- 경제무역지대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정해진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준다.</p> <p>■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71조</p> <p>- 경제무역지대에서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p> <p>-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p> | <p>■ 경제개발구법 제53조</p> <p>- 경제개발구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 준다.</p> <p>■ 경제개발구법 제54조</p> <p>- 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p> <p>-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p> |



3-3. 장려부문산업과 세금우대조치 -3

■ 특구법 장려산업.소득세율.조세감면의 우대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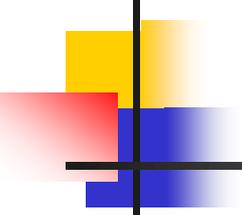
- 1) 경제개발구 사업의 '지역별 특성화 사업 육성' 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형화된 세수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 2) 개별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주력산업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본법상의 투자장려부문 규정만으로는 경제개발구의 주력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3) 지역의 특성 및 개발의 단계에 따라 지방정부나 관리기관이 투자 장려부문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경제개발구의 효율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3-3. 장려부문산업과 세금우대조치 -4

| | 개성 | 라선 | 경제개발구 |
|---------|--|--|---|
| 외국근로자고용 | <p>■ 개성공업지구법 제37조</p> <p>-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p> | <p>■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49조</p> <p>-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 <p>■ 경제개발구법 제41조</p> <p>-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
| 월최저임금 | <p>■ 노동규정 제25조</p> <p>- 종업원 월 최저 로임 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종업원의 노동 생산능률, 공업지구경제발전수준, 로력 채용상태 같은 것을 고려하여 해마다 정한다.</p> | <p>■ 노동규정 제6조</p> <p>- 지대에서 종업원월로 임최저기준은 라선시인민위원회가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p> | <p>■ 노동규정 제6조</p> <p>- 경제개발구에서 종업원 월로임최저기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경제개발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
| 근로 | <p>■ 노동규정 제13조</p> <p>- 기업은 종업원대표와 협의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하는 노동 규칙을</p> | <p>■ 노동규정 제7조</p> <p>- 지대에서는 기업의 실정에 맞게 직업동맹조직을 내오고 운영한다.</p> | <p>■ 노동규정 제7조</p> <p>- 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의 실정에 맞게</p> |

3-3. 장려부문산업과 세금우대조치 -5

| | 개성 | 라선 | 경제개발구 |
|--------------|---|--|--|
| 로력관리기관 | <p>■ 로동규정 제7조</p> <p>-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로력 채용과 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p> | <p>■ 로동규정 제2조</p> <p>- 지대의 로력 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는 라선시인민위원회가 한다.</p> | <p>■ 로동규정 제2조</p> <p>- 경제개발구의 로력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는 경제개발구를 관할하는 중앙기관 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p> |
| 로동채용계약과 로동계약 | <p>■ 로동규정 제13조</p> <p>- 기업은 종업원대표와 협의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하는 로동 규칙을 작성하고 실시할 수 있다.</p> <p>■ 로동규정 제10조</p> <p>- 기업은 선발된 로력자와 월로임액, 채용기간, 로동시간 같은 것을 확정하고 로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한다.</p> <p>- 로력채용계약을 맺은 로력자는 기업의</p> | <p>■ 로동규정 제14조</p> <p>- 기업은 직업동맹조직 또는 종업원대표와 로동 계약을 맺어야 한다.</p> <p>■ 로동규정 제13조</p> <p>- 로력을 채용하는 기업은 로력자와 채용기간, 로동 시간, 초기 월로임액 같은 것을 밝힌 로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한다.</p> <p>- 로력채용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기업의 종업원으로 된다.</p> | <p>■ 로동규정 제14조</p> <p>- 기업은 직업동맹조직 또는 종업원대표와 로동계약을 맺어야 한다.</p> <p>■ 로동규정 제13조</p> <p>- 로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로력자와 로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한다.</p> <p>이 경우 계약서에 채용기간, 로동시간, 초기 월로임액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p> <p>- 로력채용계약을 맺은 로력자는 기업의</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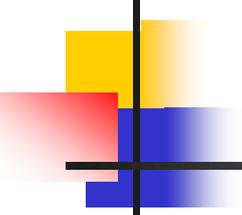


3-4. 노동시장의 유연성

1) 경제특구에서의 특혜 중 하나가 저렴하고 유능한 근로자 공급

- 이를 위하여 저렴하고 유능한 인력의 배분 및 평화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노동 정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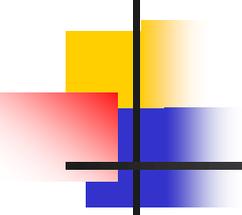
2) 북한 경제특구에서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특구별 차이가 존재



4-1.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특구정책의 한계에

대한 대안모색 : 양자간 경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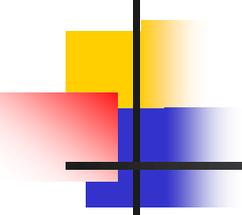
- 1) 북한이 양자간 경제협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2) 동북아시아 지역은 복잡다기한 외교안보 이슈가 상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정치상황과 경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
- 3)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는 개별국가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지난한 과정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단 다자구도가 형성된 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발전
- 4) 경제특구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자간 경제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



4-2.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특구정책의 한계에

대한 대안모색 :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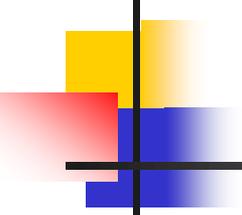
- 1) 경제개발구법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정신청으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신청의 절차상 차이만 있을 뿐,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 2) 중앙정부는 경제개발구 사업에 대한 거시적 계획수립만을 담당하고 특구 발전 계획안 작성 및 대부분의 행정사무는 가급적 지방정부가 관장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경제개발구법이 가지는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의 경제특구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권입법권을 보장하여 지역맞춤형 경제개발구 발전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4-3.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특구정책의 한계에

대한 대안모색 : 법과 현실의 괴리 극복

- 1)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의 정형화
- 2) 투자장려산업의 업종.특혜세율.조세감면정책.기업의 경영활동 자율권 등에서 경제지대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 3) 경제개발구법에서는 특히 투자장려부분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기업소득세 특혜도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기업우대조치를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
- 4) 비슷한 특혜조건이라면 인프라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라선지대에 외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개발구의 개발사업이 난항
- 5) 경제개발구는 지대의 위치와 개발 단계에 따라 특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5.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제언

- 1)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특구정책의 정치적 색채를 약화 필요성
- 2) 북한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특구사업을 통해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제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공단내 북한기업의 진출을 장려
- 3)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꾸준한 법제의 정비작업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017.11.17(금)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학술대회-
승실대·아주대 공동주최

정대진 · 정일영

왜 지자체인가?



제주의소리2007.3.13



강원도뉴스2009.3.5, 북강원도 잣나무넓적잎벌 공동방제

▲ Division of Labor

▲ 선택과 집중

▲ 참여와 확산

▲ 통일공감대

지자체 예정 대북사업

| | |
|-------|-----------------|
| 인천·경기 | 말라리아 예방·치료 지원 |
| 강원 | 솔잎혹파리 방제 |
| 제주 | 감귤 보내기 |
| 경북 | 실크로드 행사 참가 요청 |
| 부산 | 부산~나진~러시아 항로 개설 |
| 전남 | 전남~함북 '땅굴 협력' |

서울신문 2015.5.5



그러나.....



'5.24 조치' (2010.5.24)

- "北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 "남북 교역-교류 전면 중단"
- "대북 신규투자 불허"
- "우리 국민 방북 불허"
- "개성공단 신규진출-투자확대 불허(생산활동은 지속)"
-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영유아 지원은 유지)"

이명박
전 대통령

인포그래픽 컨서라

KBS

남북합의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내법률

남북교류
협력법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부지침

지자체 조례

남북합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남북한 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건수

| 연도 | 71-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총 |
|-----|-------|----|----|----|----|----|----|----|----|----|----|----|----|----|----|----|----|----|-----|
| 합의서 | 50 | 18 | 4 | 23 | 31 | 21 | 23 | 10 | 39 | 5 | 1 | 1 | - | - | 8 | 2 | 3 | - | 239 |

통일부, <<2017통일백서>>

▲ 역사적 구분

7.4남북공동성명 시기(1972~1980년대)

남북기본합의서 시기(1990년대)

6.15남북공동선언 시기(2000년대 전반기)

10.4남북정상선언 시기(2000년대 중후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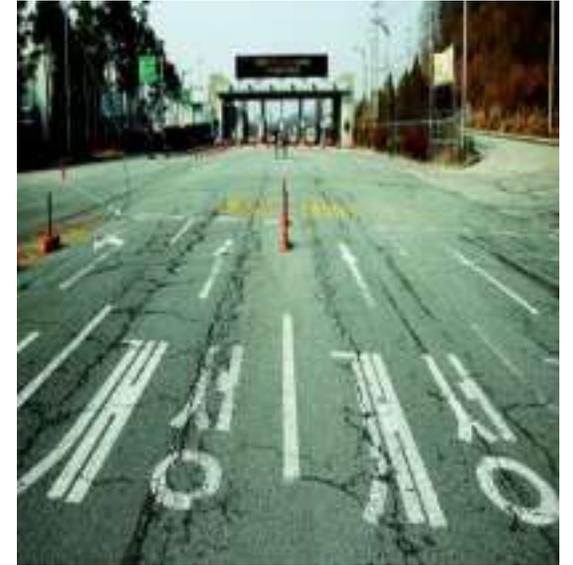
▲ 조약인가, 신사협정인가?

▲ 법률인가, 명령인가?

▲ 규범력의 문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내법률

| 제정일 | 법령 | 주요 내용 |
|------------------|------------------------|--|
| 1990년 8월 1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 관련 규정 남북의 상호방문과 주민접촉 관련 규정 남북한 거래의 원칙, 협력사업의 승인 및 반출·반입 관련 규정 |
| 1990년 8월 1일 | 남북협력기금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기금의 재원에 관하여 규정 기금의 운용, 관리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 |
| 2005년 12월 29일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규정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규정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규정 남북 회담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에 관하여 규정 |
| 2007년 5월 25일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투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규정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및 지원재단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 |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부지침

행정자치부 「남북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업무 처리지침」 (2000.7)
통일부 이관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 (2003.5)

주요내용

1. 목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북 교류사업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되어,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 되도록 함.

2. 기본 방침

가.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대북지원, 협력사업 등 대북교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지역발전과 상호이익이 기대되는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추진

나. 정부는 대북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조성에 주력

3. 세부 지원계획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추진

- 자치단체의 대북교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통일부와 협의하여 추진
- 자치단체가 대북 지원단체 등과 동행시에도 사전 별도 접촉승인을 받은 후 추진
- 북측이 대북 교류사업 추진단체 등을 통해 지자체에 교류의사 등을 전달한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 통일부에 접촉결과 보고

... 이하 생략



지자체 조례

| | | |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04.7.20 |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07.7.11 | |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05.8.10 |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 2004.11.8 | |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03.1.1 | |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08.6.20 |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5.7.30 | |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06.4.6 | |
| 경기도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 2001.11.9 | |
| 강원도 |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 1998.12.31 | |
| |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 | 2004.3.6 | |
| 충청북도 |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 2012.11.2 | |
| 충청남도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1.11.10 | |
| 전라북도 |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07.12.28 | |
| 전라남도 |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 2003.6.5 | |
| 경상북도 |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08.1.10 | |
| 경상남도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 2005.4.7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07.5.9 | |
| 서울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3.2.7 | |
| 인천 옹진군 |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07.11.20 | |
| 광주 광산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 2010.3.22 | |
| 울산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1.10.31 | |
| 경기도 | 고양시 |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 2004.4.1 |
| | 김포시 | 김포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08.6.9 |
| | 부천시 |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 2011.11.14 |
| | 성남시 |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 2015.10.12 |
| | 수원시 |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1.9.27 |
| | 안성시 |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 2016.6.21 |
| | 연천군 |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2.3.23 |
| | 파주시 |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 2004.1.10 |

| | | | |
|----------|--------------------------------|-------------------------------|------------|
| 강원도 | 고성군 | 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2001.11.5 |
| | 철원군 | 철원군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2008.1.10 |
| 충청북도 제천시 |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 2007.9.28 | |
| 전라북도 전주시 |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 2007.11.15 | |
| 전라남도 | 강진군 | 강진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 2013.12.11 |
| | 고흥군 |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2004.5.7 |
| | 곡성군 | 곡성군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 2003.7.18 |
| | 광양시 |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2012.11.21 |
| | 구례군 | 구례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2003.7.28 |
| | 나주시 |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 2009.8.3 |
| | 담양군 | 담양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조례 | 2004.1.10 |
| | 목포시 | 목포시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09.4.20 |
| | 무안군 | 무안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 2003.9.22 |
| | 보성군 | 보성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2003.8.5 |
| | 순천시 |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2003.11.21 |
| | 신안군 | 신안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2003.9.27 |
| | 여수시 | 여수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 관한 조례 | 2003.10.20 |
| | 영광군 | 영광군남북교류 협력조례 | 2003.7.24 |
| | 완도군 |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15.12.31 |
| | 장성군 | 장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08.12.31 |
| | | 장성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2008.12.31 |
| | 장흥군 | 장흥군남북교류 협력조례 | 2003.11.3 |
| | 진도군 | 진도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2003.11.4 |
| 함평군 | 함평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 2003.12.15 | |
| 해남군 |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09.11.27 | |
| 화순군 |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08.5.27 | |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5.11.4 | |
| 강원도교육청 |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 | 2007.12.21 | |
| 전라북도교육청 |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0.10.28 | |

주요유형

- ▲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위원회(협의회)
- ▲ 남북교류협력기금
- ▲ 남북교류협력위원회(협의회)
- ▲ 평화·통일교육 조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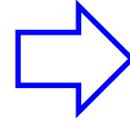
문제점 및 개선방향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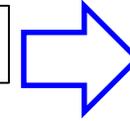
문제점

개선방향

남북합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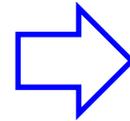


규범력 문제 / 정치적 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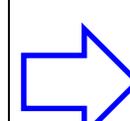


남북합의 법제화
UN 사무처 기탁

**남북교류협력
국내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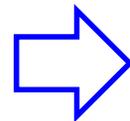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당사자성 불인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중략) 모든 활동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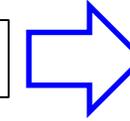


「지방자치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
정부지침**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과도한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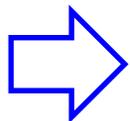


중앙-지방정부간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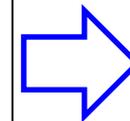
통일부, 지자체와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구성
(2017.9.22 제1차회의)

지방정부간 협조 거버넌스

지자체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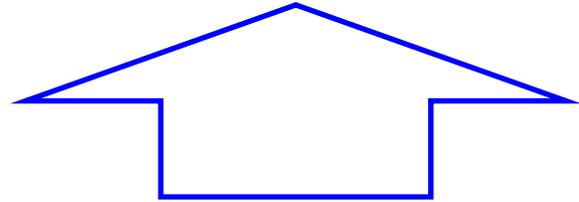


남북교류협력기금·협의회 규정에 제한
일부 지자체 평화·통일교육조례



지자체장 역할 및 의무 강화
조례 분야 다양화 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지자체 역량강화!

GLocal 통일준비!

대한민국의 지자체에서, 동북아와 호흡하는 지자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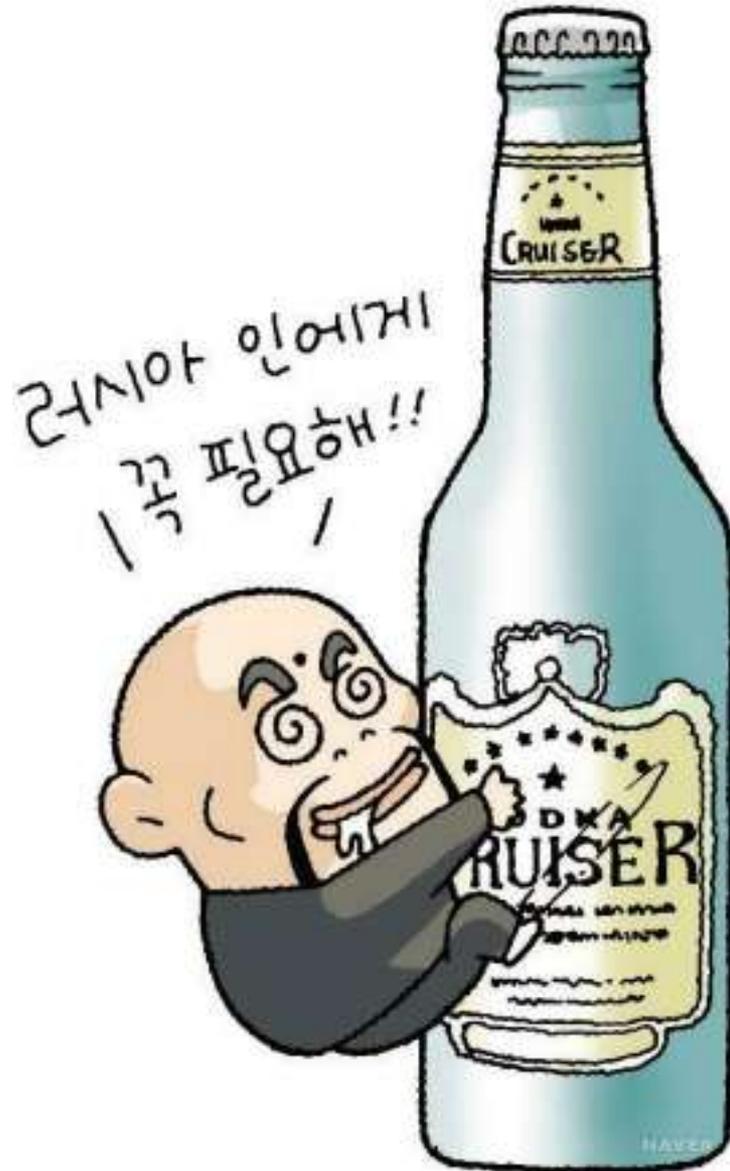
대한민국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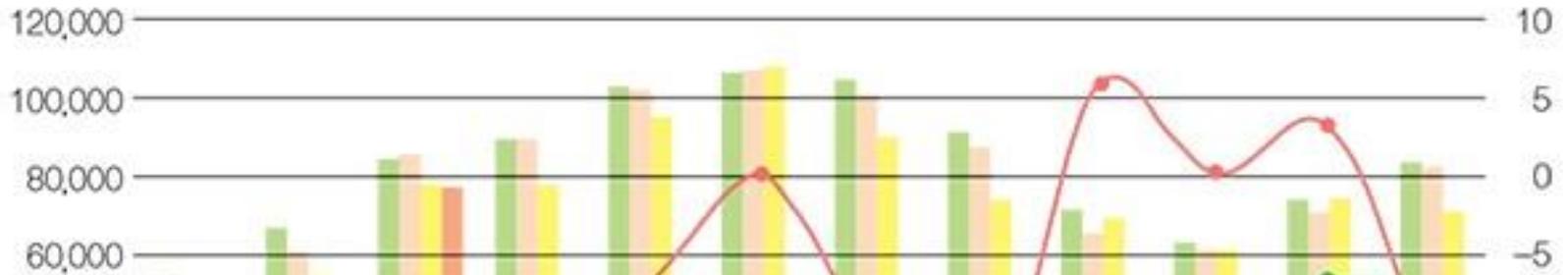
2017.11.17

Choi Soon mi



INTRODUCTION 1/3





시장화(Marketi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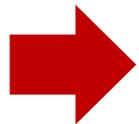
| | | | | | | | | | | | | |
|-----------------------|--------|--------|--------|--------|--------|--------|--------|--------|-------|-------|-------|--------|
| ■ 2011 | 54099 | 66954 | 84596 | 89631 | 102640 | 106616 | 105103 | 91182 | 71351 | 63371 | 73875 | 83974 |
| ■ 2012 | 45507 | 60702 | 85699 | 89540 | 102494 | 107828 | 100954 | 87699 | 65859 | 61215 | 71272 | 82465 |
| ■ 2013 | 39496 | 54069 | 77633 | 78244 | 95069 | 107970 | 90100 | 74003 | 69712 | 61314 | 73677 | 71140 |
| ■ 2014 | 39071 | 48725 | 77175 | | | | | | | | | |
| ● 전년 동월 대비 생산 증가율 | -13.2% | -10.9% | -9.4% | -12.6% | -7.2% | 0.1% | -10.8% | -15.6% | 5.9% | 0.2% | 3.4% | -13.7% |
| ● 전년 연평균 대비 생산 증가율 | -13.2% | -11.9% | -10.8% | -11.4% | -10.3% | -8.0% | -8.5% | -9.4% | -8.0% | -7.4% | -6.5% | -7.2% |

자료원: 러시아 통계청



■ 시장(Market)

-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
- 현대 국가사회의 메커니즘
- 개인의 경쟁력
- 민주시민의 자질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시장 메커니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Q. 대한민국 시장 경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태도

Q. 세대별 시장경제태도 차이: 세대효과 여부

■ 태도

- 마음의 자세, 반응 경향성
- 행동을 유도하거나 영향을 준다고 가정되는 잠재적 변인

■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인지
-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 시장경제 구조 내 정부-기업-시민의 역할에 대한 생각 등
- JCEE(Joint Council on Economics Education)의 경제에 대한 태도 (Survey on Economic Attitude), Walstad와 Soper(1989)의 ATE(Attitudes Toward Economics) 등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태도

- 이무철(2008): 한 주민의 경제관과 개혁개방에 대한 의식을 예측하여 한 당국이 요구하는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를, 사상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더 선호함을 밝힘.
- 손정원(2012): 탈북청소년의 학교 경제교육 실태,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경제의식 비교, 탈북청소년의 경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 · 가정환경 변인 · 학교경제교육 변인 분석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의식 관련 연구는 일방적 경제적응을 기대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우리 사회가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회구성원이 갖고 있는 태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서울시, 경기도, 인천 지역 거주
- 20 ~ 69세의 북한이탈주민 405명
- 편의 표집 중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 응답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설문을 실시
- SPSS WIN 21.0v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 유의수준 $p < .05$, $p < .01$, $p < .001$ 에서 검증
-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
- 신뢰도 분석
-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scheffe 사후검정



측정도구: Lephardt & Breeden, MAI(Market Attitude Inventory)

| | |
|---------------------------------------|--|
|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는... | |
| 1) 소득이 불공평하게 배분된다 | 12) 사람들이 여러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 2)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다 | 13) 사람들이 환경을 남용(지나치게 사용) 한다 |
| 3) 기업들이 비윤리적으로 행동을 하게 만든다 | 14)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기 쉽다 |
| 4) 상품의 질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한다. | 15) 기업(회사)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 5) 치안, 도로, 의료보험과 같은 중요한 공공서비스가 부족하다 | 16)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간섭을 많이 해야 한다 |
| 6)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공을 장려한다 | 17) 다른 나라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너무 쉽게 되어있다 |
| 7) 탐욕(지나친 욕심)과 물질만능주의에 빠지기 쉽다 | 18)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든다 |
| 8) 누구나 일할 기회를 똑같이 갖는다 | 19)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갖는다 |
| 9) 경제성장과 쇠퇴가 불규칙하게 일어난다 | 20) 기술혁신을 높게 평가하고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을 장려한다 |
| 10) 대부분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진다 | 21) 소비자들은 상품을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다 |
| 11) 한 두 개의 특정 기업(회사)이 지나치게 큰 힘을 갖게 된다 | 22) 결론적으로 나는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공평하고 윤리적인(도덕적인) 경제체제라고 믿는다 |



응답자 특성

| | 특성 | 빈도 | 퍼센트 |
|-------------------------|---------|-----|-------|
| 연령 | 20대 | 63 | 15.6 |
| | 30대 | 96 | 23.7 |
| | 40대 | 121 | 29.9 |
| | 50대 | 77 | 19.0 |
| | 60대이상 | 48 | 11.9 |
| 제3국 체류기간 (평균:27.8개월) | 6개월미만 | 155 | 38.3 |
| | 1년미만 | 52 | 12.8 |
| | 1-3년미만 | 82 | 20.2 |
| | 3-5년미만 | 43 | 10.6 |
| | 5년이상 | 78 | 18.1 |
| 남한 정착기간 (평균:81.8개월) | 3년미만 | 73 | 18.0 |
| | 3-5년미만 | 71 | 17.5 |
| | 5-7년미만 | 64 | 15.8 |
| | 7-10년미만 | 109 | 26.9 |
| | 10년이상 | 88 | 21.8 |
| | 합계 | 405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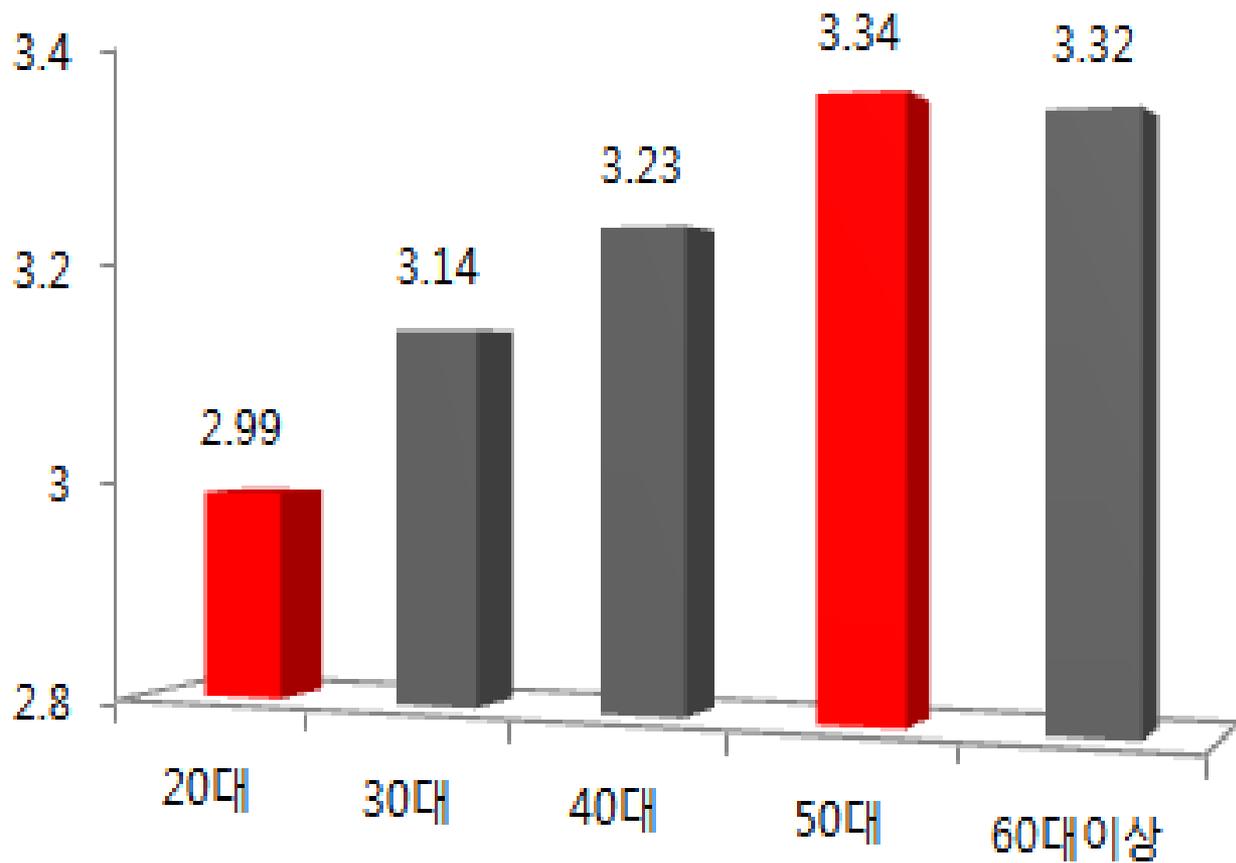


측정도구의 신뢰도

| 변인 | 문항내용 | 문항 수 | Cronbach α |
|---------------------|------|------|-------------------|
| 대한민국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 1-22 | 22 | .885 |



세대별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태도 1/2





세대별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태도 2/2

| 종속변수 | 연령 | N | M | SD | F | p | scheffe |
|------------------------|----------|-----|------|------|-------|------|---------|
| 대한민국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 20대(a) | 63 | 2.99 | 0.54 | 3.372 | .010 | a<d |
| | 30대(b) | 96 | 3.14 | 0.60 | | | |
| | 40대(c) | 121 | 3.23 | 0.61 | | | |
| | 50대(d) | 77 | 3.34 | 0.60 | | | |
| | 60대이상(e) | 48 | 3.32 | 0.83 | | | |
| | 합계 | 405 | 3.20 | 0.63 | | | |



■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가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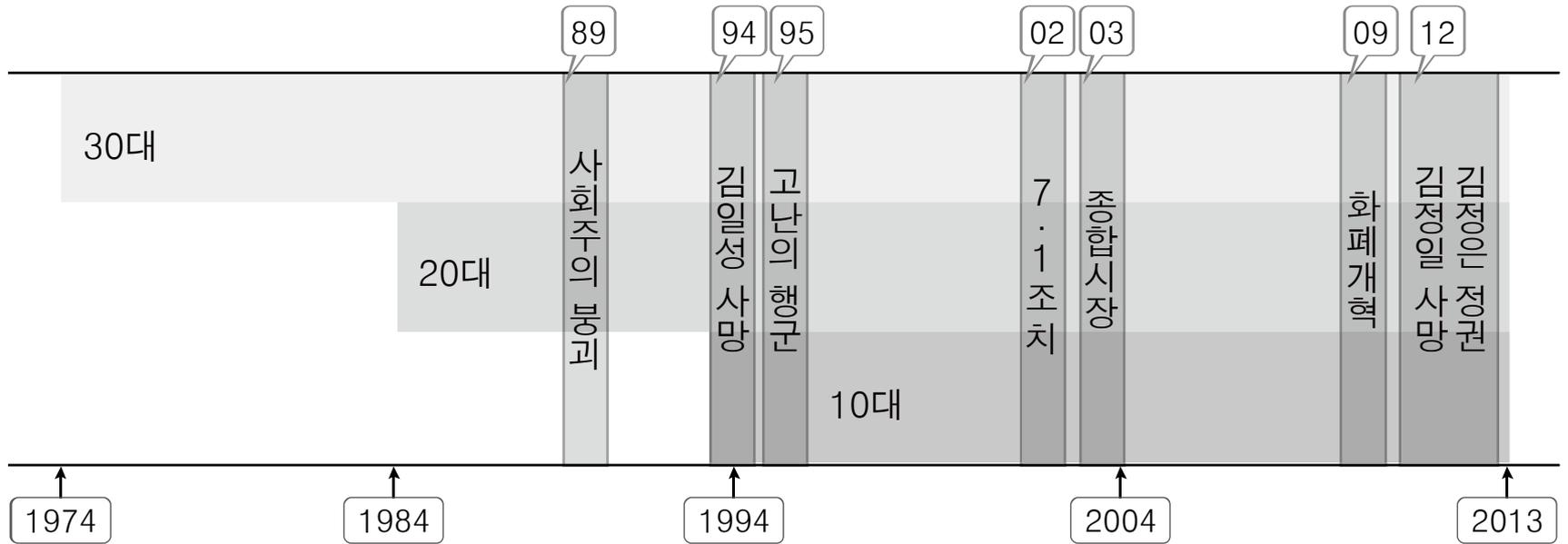
첫째, 젊은 세대들이 북한에서부터 시장화를 겪었기 때문일 가능성

둘째, 북한의 경제난을 겪은 장년층이 시장경제의 필요로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

셋째, 20대에게 시장 메커니즘의 경쟁 구도가
다른 세대들에 비해 더욱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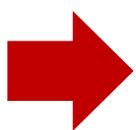
북한의 주요 정치경제적 사건





■ 남한중심적 사고의 폭력성

- 누구를 위한 ‘적응’ , 누구를 위한 ‘사회통합’ 인가?
- 시장에서의 적응을 강요할 수 있는가?
- 남한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생각에 관심이 있는가?
- 사회통합의 수준?



**‘사회통합’ 은 각 사회구성원의 태도에
같은 수준의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 세대에 따라 시장경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 대한 분석
-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적, 사회적 욕구



Thank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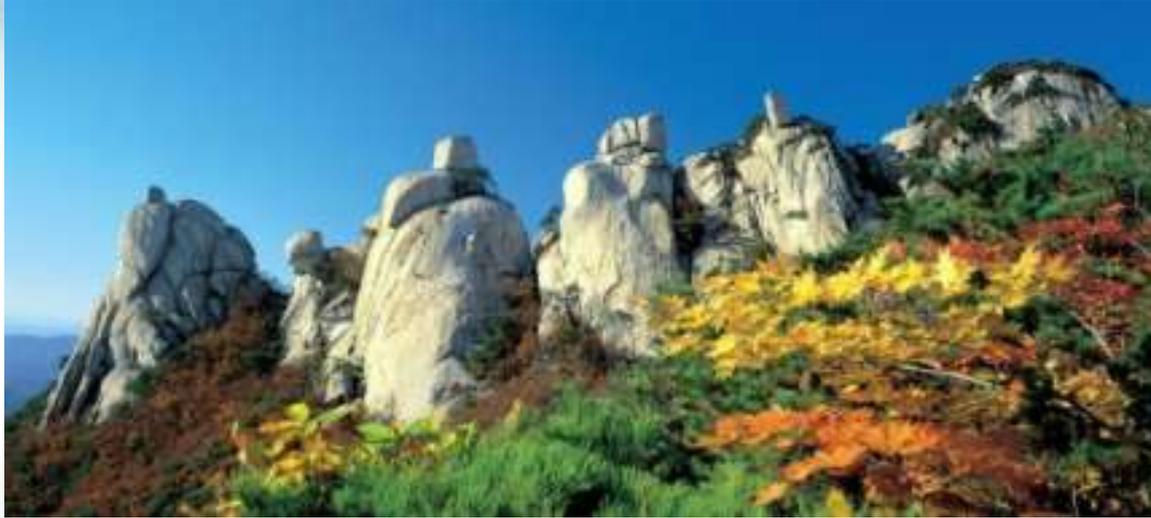
독일 통일 주역들의 개성공단 평가



“나도 독일통일(안)을 입안하며
'개성공단'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다.
독일도 저랬으면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없앨 수 있었겠다
싶어 너무 놀랐다.
저 탁월한 통일방안이 얼마나
놀랍고 또 놀라운가.
남북한의 그 민족이 부럽다”

독일통일의 설계자
Egon Bahr

문화, 언어 차이의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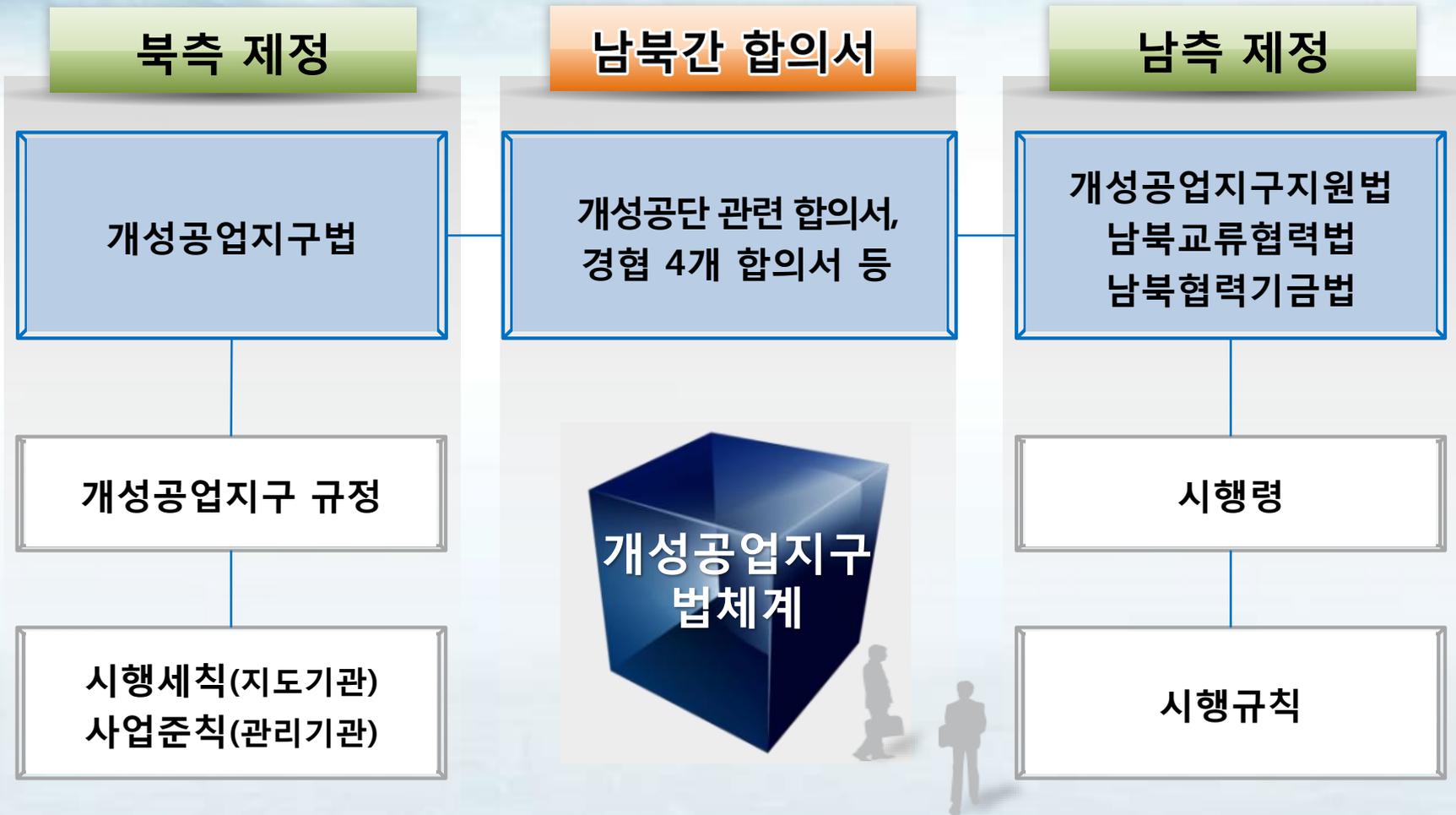
통일 법제도 도입의 초석



북-해외 협력 특구의 기준



합의서에 따른 법체계



개성공단 내 남북간 합의 모습



합의서

합 의 서

조선아시아개발당양평위원회(이하 《아태》라고 함)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이라고 함)와 현대아산주식회사(이하 《현대》라고 함) 및 한국토지공사(이하 《토지공사》라고 함)는 개성공업지구 공장 구역의 개발업자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2000년 8월 22일 아태-민경련 및 현대사이에 맺은 합의서에 따라 현대 및 현대와 공동으로 공장 구역사업을 하기로 한 토지공사를 개성공업지구 공장 구역의 개발업자로 지정한다.

2002년 12월 4일

조선아시아개발당양평위원회의
위원에 의하여

김광수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
위원에 의하여

최영

한국토지공사측

대표하여
위원에 의하여

현대아산주식회사
대표하여

최영

부 속 합 의 서

번호: 01-3-11-01-001

한국토지공사(이하 《수요서》라고 함)와 중앙연구개발지도총국(이하 《공급서》라고 함)은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모래수송거리가 총연의 면도 4km로부터 권도 12km로 늘어났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공급서》와 《수요서》는 2004년 12월 23일 성명이 수요하여 필요시킨 《개성공업지구 준공사용에 관한 합의서》에 지적된 모래단가 900/m³에 공급량 100만t수준에 도달할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수요서》는 모래단가 5100/m³에 포함된 광물 8%의 수송거리를 제외하고 늘어난 거리(광물 18%)에 따르는 추가비용으로 0.47 US/m³를 《공급서》측에 매달 지출한다.
3. 늘어난 수송거리에 대한 추가비용지분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여 앞으로 수송거리변경에 따르는 추가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공급서》와 《수요서》는 개성공업지구건설에 필요한 모래공급과 관련 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5. 이 합의서는 2005년 9월 15일에 체결되었으며 그 부본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토지공사측

위원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

최영

중앙연구개발지도총국

위원에 의하여

최영

2005년 9월 15일

남북 간 최초의 보험금 협상



남북 간 최초의 보험금 협상



납기와 품질은 기업의 생명줄이다

시장경제의 인식과 학습 - 브랜드가치 인식



시장경제의 인식과 학습 - 짹통의 등장



외형적 변화



외형적 변화-비교



에피소드-외부세계에 대한 관심



에피소드-외부세계에 대한 관심



국제화에 대한 인식 제고



남북 간 대화 및 상시적 소통의 장



에피소드-남북협력



에피소드-남북협력의 결과





감사합니다!

진봉산에서 바라본 공단모습